

파주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

□ 제안이유

-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립된 파주시 청소년 문화의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의 보호·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가. 청소년 문화의집에는 단체이용시설인 소공연장, 다목적교실과 개인이용시설인 노래교실, 컴퓨터교실, 댄스연습실, 비디오교실, 문화카페등과 기타 청소년 보호·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3조)
- 나. 시설의 사용자 또는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, 단체이용시설의 경우 사용허가 신청시에, 개인이용시설의 경우 시설 출입시에 납부하도록 함. (안 제8조)
- 다.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 문화의집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관은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11조)
- 라. 시장은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였을 경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13조)

□ 검토의견

가. 법령적합성

- 동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(사용료) 및 동법 제135조(공공 시설), 제141조(사무의 위탁) 규정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써 법령 적합성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,

나. 내용타당성

- 기존 노인·아동 다목적 복지회관은 2차례에 걸쳐 수해를 입어 시설물의 이용도가 낮아 청소년을 위한 놀이공간이 전무한 상태에 2000년 본예산에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로 총사업비 470,000천원중 시비 270,000천원을 편성하였고,
- 200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82,746천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청소년 놀이공간을 조성하였는바,
- 청소년 문화의집의 관리·운영에 관하여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는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에관한조례에 의하도록 하였는바, 세부적인 운영방법등 설명이 필요함.